

긴급소액자금·종합지원자금 (특례대부)을 차입하신 분에게 ~상환면제 안내~

당신이 빌린 긴급소액자금·종합지원자금(특례대부)은 2023년부터 상환(빌린 돈을 갚음)이 시작됩니다. 이 자금은 국가가 정한 요건(조건)에 해당하는 경우 ‘상환면제(갚을 필요가 없음)’가 됩니다.
자신이 ‘상환면제’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고 필요한 수속을 해 주십시오.

1 상환면제 수속

상환면제 수속 시기는 빌린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.
2022년에 상환면제 수속이 가능한 것은 ‘긴급소액자금’ 및 ‘종합지원자금(최초대부)’입니다.

※이번 대상은 빨간 테두리 부분(2022년 3월까지의 대부 신청)

자금 종류	긴급소액자금	종합지원자금 (최초대부: 1~3개월째)	종합지원자금 (연장대부: 4~6개월째)	종합지원자금 (재대부)
상환면제 수속을 하는 해	2022년		2023년	2024년

종합지원자금 연장대부·재대부는 2023년 이후에 알려드립니다.

2 2022년 상환면제 조건

2021년도 또는 2022년도에 ‘당신(빌린 사람)’과 ‘당신(빌린 사람)의 세대주’ 양쪽이 ‘동일 연도’에 ‘주민세 균등할·소득할 모두 비과세(주민세를 낼 필요가 없음)’인 경우는 상환이 면제됩니다.

3 상환면제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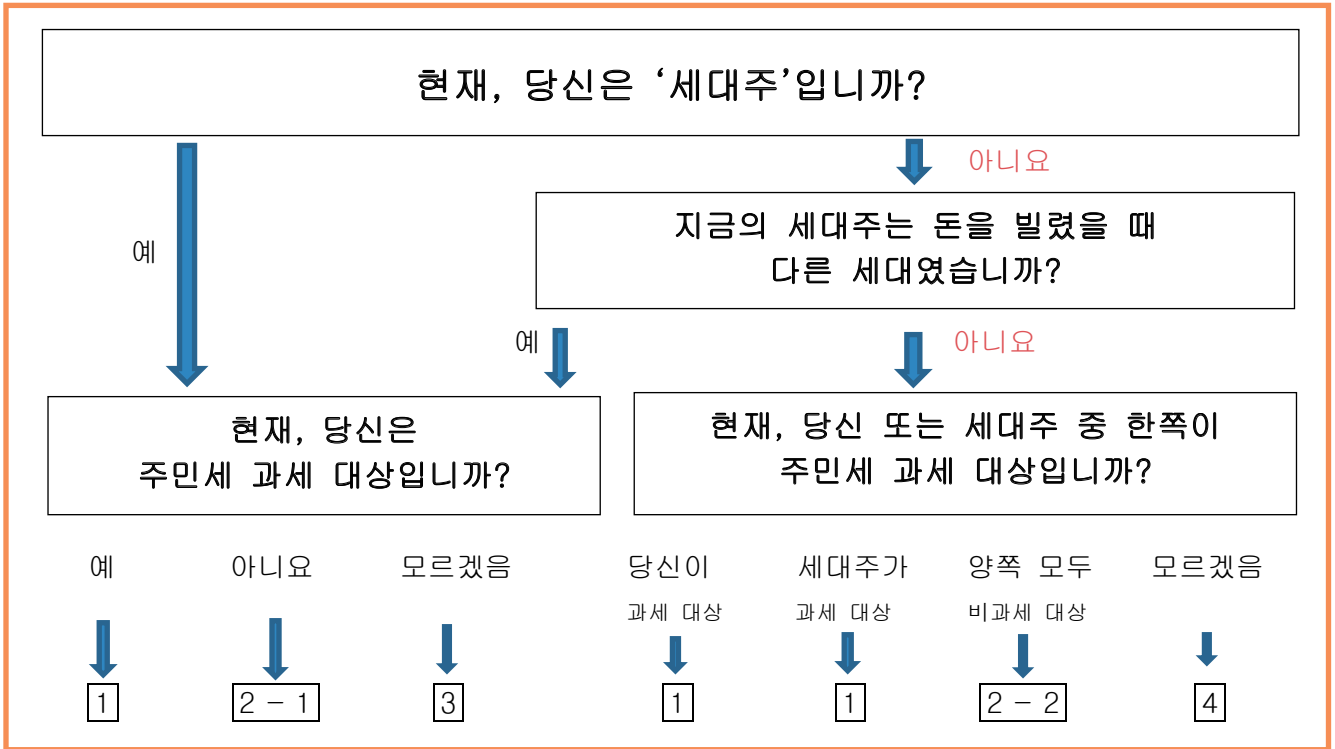
- 신청기간: 2022년 6월~8월 31일(당일소인 유효)
 ※‘신청기간’이 지나면 어떠한 사유라도 접수가 불가하니 주의하십시오.
- 신청처: 사회복지법인 후쿠시마현 사회복지협의회
 ※이 문서에 동봉된 봉투에 넣어 우송해 주십시오.
- 필요서류: ①면제신청서(동봉된 서류, 빌린 자금별로 필요합니다.)
 (가) 긴급소액자금: 분홍색 면제신청서
 (나) 종합지원자금(최초대부): 연두색 면제신청서

- ②세대전원 주민표(세대 전원이 기재되어 세대주의 성명·관계를 알 수 있고 면제신청 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)
- ③주민세 과세증명서(또는 비과세증명서)
 - ※‘당신(빌린 사람)’과 ‘당신(빌린 사람)의 세대주’ 양쪽 모두 ‘**동일 연도**’ 발행(빌린 사람과 세대주가 같은 경우는 1부)
 - ※‘과세증명서’의 ‘과세액’란이 ‘0(제로)’일 것. 공란은 불가.

과세증명서(또는 비과세증명서)
 2021 연도: 2021년 6월경에 발행되는 것(2020년 1~12월분 소득 기재)
 2022 연도: 2022년 6월경에 발행되는 것(2021년 1~12월분 소득 기재)

4 상환면제 대상 여부 ('2. 2022년 상환면제 조건' 확인)

상환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.



1 2022년 6월 이후에 시정촌 관공서 세무과에 확인하십시오.
 2022 연도에 '주민세 비과세'인 경우는 상환면제 대상입니다.

2-1 당신이 '주민세 비과세'로 상환면제 대상입니다.
 2-2 당신과 세대주가 '주민세 비과세'로 상환면제 대상입니다. } '3. 상환면제 신청방법'을 참고하여 수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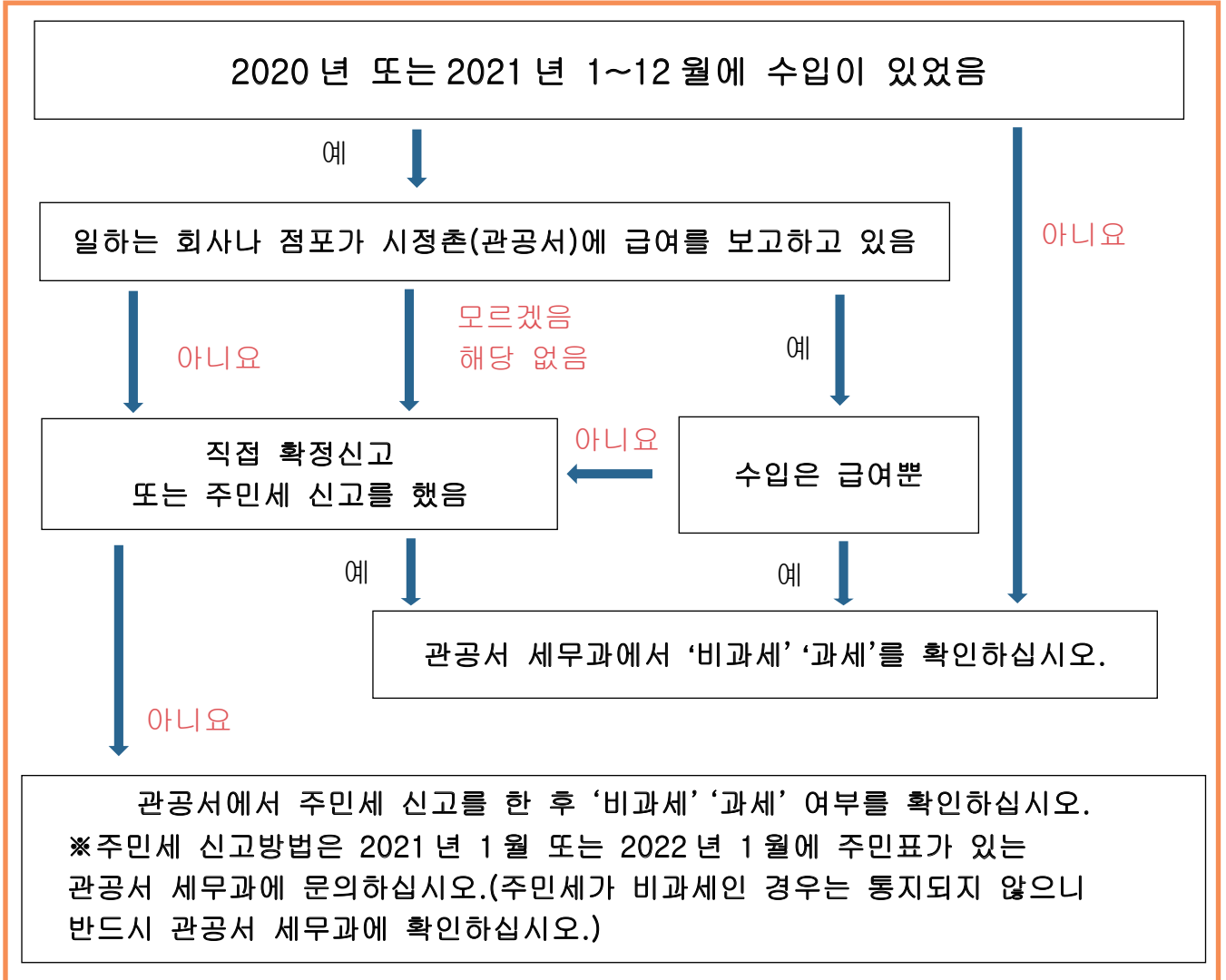
3 당신이 '주민세 비과세'인지 확인하십시오.

4 당신과 세대주가 '주민세 비과세'인지 확인하십시오.

※2021년 1월 또는 2022년 1월에 주민표가 있던 시정촌 관공서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5 주민세 확인 방법

※수입이 연금뿐인 경우는 관공서 세무과에서 '비과세' '과세'를 확인하십시오.



6 상환면제 신청 결과

○2022년 10월경까지 상환면제 여부를 문서로 알려드립니다.

※문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. 결과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.

○상환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은행 계좌이체 또는 요금청구서로 차입금을 납부하십시오. 계좌이체를 희망하는 경우는 계좌 정보를 신고하십시오.

7 문의

사회복지법인 후쿠시마현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과(생활지원실)

전화: 024-523-1250(오전 9시~오후 5시까지)

※토·일, 공휴일, 연말연시 제외